

#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16.



##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12조, 및 제20조, 행정절차법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송달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이○희	00.6.25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- 구직촉진수당 2회이상 연속 미제출 - 연락두절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재진단에 의한 필수 대면 상담일자 미방문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폐문부재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74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 6. 16. ~ 2026. 7. 1.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이운민(Tel. 031-231-792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